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806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성원 · 박성훈 · 김은혜  
이헌승 · 김선교 · 정동만  
고동진 · 박충권 · 김정재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br>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br>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10조(사업) ① -----<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br><u>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u><br><u>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u><br><u>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u><br><u>· 운영사업</u> |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